##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6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김정호·허종식·어기구

정성호 • 윤후덕 • 김남희

전재수 · 박해철 · 박 정

이훈기 • 박희승 • 이수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요구에 국무위원 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규 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 6항).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3항 중 "답변을 하여야"를 "성실히 답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구) ①・② (생 략)	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	③		
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			
여 <u>답변을 하여야</u> 한다.	<u>성실히 답변하여야</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		
	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